

## 동탄파크릭스아파트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

“동탄파크릭스” 계약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.

하나은행 동탄역지점(3851 동~3857 동),  
 하나은행 동탄지점(3858 동~3864 동)

### ● 대출서류 접수 일정

접수일자	2023.07.17(월) ~ 2023.07.21(금)
접수장소	건본주택 (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-1)
접수시간	오전 9시 ~ 오후 4시

### ● 대출서류 접수시 사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

- 중도금대출 신청은 모바일뱅킹으로 이루어집니다.
- 공동명의계약세대의 경우에는 모바일뱅킹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하며, 공동명의인 모두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, 대리인은 불가합니다.

### ● 준비서류 (모든 서류 필수 제출 - 1개월내 발급분)

▶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각각 구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

공통서류	소득 증빙 서류		
① 분양계약서(원본) 및 계약금 영수증 ↳ 전매한 경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②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↳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표시 ↳ 분리세대는 각각 제출 ④ 전 세대원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(과거 주소 포함) ↳ 전 세대원 필수(미성년자 포함) ↳ 분리세대는 각각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 부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 ↳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 전화 후 팩스 수령 ↳ 공동명의계약자는 공동명의인 포함 ⑦ 소득증빙자료(우측 참조)	직장인	① 재직증명서 ② 최근 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취업(복직) 1년 미만 : 취업(복직) 후 급여명세표 전부 - 현재 휴직자 : 휴직 전 1년간 급여명세표 ↳ 모든 서류는 회사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.	
	개인사업자	①사업자등록증 ②소득금액증명원 (최근 2개년) - 개업 1년 미만 : 소득신고없음 사실증명서(세무서 발급) +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 이상)	
	연금소득자	①연금수급증서 ②연금입금 계좌 거래내역 (최근 3개월 이상) ↳ 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공무원연금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	
	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	①위촉증명서 ②소득금액증명원 (최근 2개년) ↳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제출	
	무직자	세무서 발행 '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' + 아래 ①~③ 중 택 1 ① 건강보험자격이 지역세대주인 경우 ↳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 이상) ② 분양계약자가 국민연금 납부자일 경우 ↳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(최근 3개월) ③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(직전연도 기준) ↳ 국세청 홈텍스 발행분 또는 개별 카드사에서 발급	

## ※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 및 준비 서류

(해당 서류를 제출하신 손님만 보증료 할인이 가능합니다.)

구 분	내 용	준 비 서 류
다자녀가구	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	○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신혼부부 (결혼예정자)	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이하이고,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(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) 인 경우	○ 혼인관계증명서 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) ○ 소득확인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)
저소득가구	보증신청인 (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	○ 소득확인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 ○ 가족관계증명서
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 2 조제 1 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	○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)
장애인가구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(주 1)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	○ 주민등록등본 ○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·군수·구청장이 발급) 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국가유공자 가구	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 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,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○ 독립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 ○ 5.18민주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○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
의사상자가구	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 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『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상자 증서, 의상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	○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○ 의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
한부모가구 · 조손가구	피보증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거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	○ 한부모가족증명서
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 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.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.	○ 주민등록등본
독거고령자가구	보증신청인이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친족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	○ 주민등록등본
모범납세자	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	○ 모범납세자증명서 (우대기간 이내, 1개월 내 발급분) - 산업훈장, 산업포상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.

(주 1)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보증신청인(피보증인)의 세대구성원으로 확인이 되어야 함.

■ 보증료 할인 :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신청인이 할인대상\*에 해당하고 해당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증료 할인 적용

\* 할인 대상 조건 및 보증료 할인율은 집단취급승인일 기준

■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,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

※ 보증료의 세부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지침에 따릅니다.